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5898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589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417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가합7949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주식회사

판결 선고 2016. 9. 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417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N

이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처 G의 명의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신주인수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C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상당의 부담을 안는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C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로 전부 소멸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의 자본금을 15억 원 증가시키고 기존 주주들이 그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받은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C가 1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기존 주주들로부터 C가 대납한 것으로 처리한 신주인수대금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15억 원이 그대로 C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C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욱